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

-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/F 결과 -

2019. 6. 27.

관계기관 합동

순 서

I. 추진배경 1
Ⅱ. 추진경과 2
Ⅲ.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4
1.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5
2.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 8
3.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10
4.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 12
5. 금융회사의 핀테크 고도화 지원14
IV. 기대효과 17
♡. 향후계획18

Ⅰ. 추진배경

- □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,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'핀테크'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
 - 이에 따라, 주요국들은 핀테크를 **양질의 일자리를 창출**하는 **고부가가치 핵심 서비스산업**으로 인식하고 집중 육성·지원중
- □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여 **금융산업에 변화의 새바람**을 불어넣고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**핀테크 지원정책 적극 추진**
 - 핀테크를 '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'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, 로드맵인 「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」을 마련·추진중('18.3월)
 - 특히, '19년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**'골든타임'**으로 인식하고, 체계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**6대 추진전략***을 수립('19.1월)
 - *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2 낡은 규제 혁파 3 핀테크 투자확대
 - 4 신산업분야 육성 6 글로벌 진출 지원 6 디지털 금융 보안 강화
 -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('19.4.1일) 및 규제 샌드박스* 본격운영, 금융인프라 혁신 위한 오픈뱅킹,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추진 등
 - * '19.4.1일부터 6.26일까지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→ 2건 시장출시
 - ◆ 그간 정책적 노력 등의 성과로, 최근 이코노미스트誌('19.5.4일)에서
 한국 핀테크를 주요사례로 소개하였고, 한국 핀테크 도입지수
 (Fintech Adoption Index, EY)도 큰 폭 상승('17년 32% → 19년 67%)
 - * 싱가폴, 홍콩과 동일한 수준으로, 핀테크 선진국인 영국 수준(71%)에도 근접
- □ 그 동안의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**핀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**하고 있으나, **국제적 경쟁력 확보**를 위해서는 추가 노력 필요
 - 특히, **민간전문가 등 현장**에서는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중 지속적인 "규제혁신"이 가장 긴요하다는 의견

Ⅱ. 추진경과

1 T/F 구성 및 논의경과

- □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**全금융권·全부처 관련 규제의 발굴·개선**을 위한 **민관합동 규제혁신 T/F*** 구성('18.10월)
 - * 금융위.국조실.기재부, 금감원, 민간전문가, 유관기관, 협회, 핀테크지원센터 등 참여
 - 핀테크 현장간담회, 대국민 의견수렴,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**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**가 건의됨('18.12월)
 - ¹ 핀테크 투자 활성화, ²신기술 지원, ³ 빅데이터 활성화, ⁴ 비대면 거래 활성화, 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의 **5개 분과**에서 과제 검토
 - * ① 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('18.12월~'19.1월) → ② T/F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('18.12월~'19.5월) → ③ 추가 조정회의(국조실.금융위, '19.6월)
 - ※ 금융外 **타분야 관련 융합과제*는 국조실**에서 총괄 검토·조정
 - * 기재부, 행안부, 복지부, 법무부, 과기부, 중기부

2 검토 결과

- ◈ 총 188건 검토결과, 150건을 수용(수용률 79.8%)하여 개선 추진*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 수용(수용률 77.3%)
- □ 수용과제 150건은 법령 개정, 유권해석 등을 통해 '19년내 개선 추진
 -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의 자본금 요건 완화(40억원 → 15억원),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(개인정보 포함) 등 **44건**은 기 조치 완료
 - 이 비대면 실명거래 확대(법인·미성년자 대리인),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대상 확대 등 96건은 즉시 개선 착수
 -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완화,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등 10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후 규정개정 검토
- □ **불수용과제 38건**중 일부(15건)*는 대안 개발, 관계기관 및 이해 관계자 추가 논의 등을 거쳐 **중장기 과제**로 지속 논의
 - *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조정, 신협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

3 검토시 중점 고려사항

- < 핀테크 규제혁신의 목표 > —

- ◈ 규제를 사회적 가치의 변화·조정 등 시대변화에 맞게 발전시켜사회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궁극적인 목표
 - → T/F는 아래 4대 원칙에 따라 건의과제 검토하였음
- ① 신기술 발달, 디지털 환경변화 등 고려 → 기존의 낡은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*에 따라 검토
 - *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·제품의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,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유연한 입법방식(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신설, '17.7.17일 시행)
- (주요사례) 법인·미성년자 대리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허용, 바이오인증 확대, 자동차 부품정보 및 주행거리정보 제공 허용 등
- ② 비블러(Big blur) 등 산업간 융합 현상 고려 → 금융위 소관 법령· 규제外 **타 부처 융합 규제**까지 **종합적**으로 검토(국조실 주관)
- (주요사례) 보험사 등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근거 마련(복지부), 벤처·창투조합의 핀테크 금융사 투자 허용(중기부) 등
- ③ **금융시장 및 시스템 안전성**에 미치는 영향 고려 →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, **규제 샌드박스** 통한 **테스트** 우선 실시 후 개선 검토
- (주요사례)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완화, 은행 부수업무로 알뜰폰 사업 허용, 개인간 신용카드를 활용한 송금 허용 등
- ④ 활용기술이나 영업방식의 유사성, 소비자 등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**가이드라인** 등을 통한 **자율적 규율체계** 형성 유도
- (주요사례) AI 등 신기술 활용 인증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,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 마련 등

Ⅲ.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(※주요 개선과제를 중심으로)

규제혁신 목표

규제를 시대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사회전체의 후생을 극대화

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

지루 단대표 활성화

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

-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
- 벤처 창투조합의 핀테크 금융사 투자 허용

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



신기술의 금융시스템 및 규율체계 적용가능성 확대

- AI 등 신기술 활용 인증방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
-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감독 방안 수립

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



금융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서비스 품질 제고

-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의 핀테크 기업 등에 공유
-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

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



핀테크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

-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범위 확대
- 바이오정보 활용시 실명확인 간소화
-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의 설명의무 이행방식 다양화

금융회사의 프테크 고도화 지원

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

- 은행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 허용
- 자동차보험 분야 정보공유 활성화
-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근거 마련
- 핀테크 업무제휴시 수익배분 자율화

1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

◆ 금융권 등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금융-핀테크간 결합을 촉진하고,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

□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

- (기존)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제한적임
 - 금융·보험업 또는 밀접업종外에는 **지분 15% 한도**로 출자를 제한
 - 핀테크 기업을 100% 출자가 가능한 금융·보험업의 밀접업종 으로 보기 위한 유권해석*을 하였으나, 허용 범위가 한정적
 - * **핀테크 사업의 범위**('15.5월, 금산법·금융지주법·은행법에 대한 유권해석): ① 전자금융업자·전자금융보조업자(전자금융거래법) ② 금융전산업(은행업 감독규정시행세칙), ③ 금융데이터 분석, 금융 S/W, 금융플랫폼 등 신사업부문
 - 투자규모 관계없이 금산법 또는 관련법령상 사전승인 필요
- (개선) 금융회사가 100%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
 '핀테크 기업'의 범위를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 하고, 투자절차도 간소화
 - ※ 기조치 사항('18.11.16일, 국무총리 은행장 간담회 후속조치)
 - ▶ 보험회사가 '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' 기업 (핀테크 기업 포함)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보험업법 시행령 개정, '19.7.1일 시행)
 - * 기존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가 100% 출자가능한 회사를 금융회사, 신용정보회사 등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해석을 통해서도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기 어려웠음
 - ▶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투자 가능여부 확인, 승인심사 등의 빠른 진행을 지원하는 신속 처리절차(Fast-Track) 마련(금감원, '18.12월)
 - (a) '핀테크 기업' 범위 확대 : [●]혁신법에 따른 **혁신금융사업자**· 지정대리인, ^②AI·빅데이터·블록체인 등 汎用 신기술로서,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^{*} 포함
 - * 일반 범용기술 기업이나, 금융과 결합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

- (b) 절차 간소화 : 출자시 사전승인 → 사전신고 등으로 간소화 하고,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 면제(사후보고로 대체)
- ☞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('19.7월)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 추진('19.하~)

< 기대효과 >



② 벤처·창투조합의 핀테크 금융사 투자 허용

- (기존) 벤처·창투조합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되어, 이에 해당하는 일부 핀테크 업종*에 투자 불가
 - * 예)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(크라우드펀딩),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
- (개선) 벤처·창투조합이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소액해외 송금업자,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투자금지 대상에서 ICT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·보험업자 제외
 - ☞ **창업지원법 시행령**('19.3월) 및 **벤처투자법 시행령**('18.12월) 개정완료

< 기대효과 >



참고 1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약 해소시 기대효과

① (투자대상 핀테크기업 증가) '핀테크 기업'의 개념을 확대 정의하여 금융회사가 출자가능(100%)한 기업이 큰 폭 증가

> 현행 개선

금융업 또는 금융업 직접 관련 업종에 한해 100% 출자 가능

- [은행] 금융·보험업, 은행관련업종에 │- ① 금융업과 직접 관련성 있는 대해서만 15% 이상 출자 가능
- [보험] **보험업과 직접 관련**이 있거나 보험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시 15% 이상 출자가능('19.7월~)
- [지주] 금융보험업 또는 금융보험업과 **밀접한 관련**이 있는 회사만 소유 가능
- [증권] 금융보험업, 금융업 직접 관련 업종, 금융기관의 **효율적인 업무수행**에 필요한 회사만 지배 가능(금산법)

직+간접적 관련성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100% 출자 가능

- **핀테크 기업**(기존 핀테크 기업 유권해석, 혁신서비스, 지정대리인 등 포함)
- **② 범용기술**(AI, 블록체인, 빅데이터 등) 기업으로서 현재 금융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더라도, **향후 금융서비스**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 (※ 일본 은행법 입법례)
 - ☞ [1단계] 가이드라인 제정 (핀테크 기업 범위 명확화) [2단계]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금융업권별 법령 개정
- ② (절차 간소화) 사전신고, 사후보고 등으로 승인절차를 대체 하여 투자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금융회사 규제비용 절감

현행 개선

핀테크 기업 출자를 위해서는 **사전승인**이 원칙

- [은행·증권] 금산법상 **사전승인**
- [보험] 보험업법상 **사전승인** (보험업 밀접업종은 사전신고 가능)
- [지주] 지주법상 **편입승인·신고**

사전신고 또는 **사후보고**로 대체하여 시간 및 비용 절감

- 원칙적으로 사전신고
-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투자는 **사후보고** 등으로 대체
- ☞ [1단계] 가이드라인 제정 (승인심사 신속처리절차 규정) [2단계]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금융업권별 법령 개정

2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

◆ 신기술의 지속적인 변화·발전 감안시, 성급한 법제화 보다는 자율규범, 테스트 등으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해나갈 필요

① AI 등 신기술 활용 인증방식 관련 가이드라인

- (기존) 최근 AI 음성인식 스피커* 등을 활용한 금융거래 조회 및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, 인중·보안 등 기준이 부재
 - * 아마존 Alexa, SKT NUGU : 4자리 숫자를 구두로 인증 → 등록한 카드로 결제 네이버 Clova : "결제할게" 라고 구두로 인증 → 네이버페이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
- (개선)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·보안 자율기준* 마련
 - * 금융회사 등은 거래의 종류, 성격, 위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 사용(자율) → 금융회사 등이 참고할만한 인증방법, 보호장치, 위변조 방지장치 등 소개
 - ☞ 관계기관 합동 가이드라인 마련('19.하, 금감원·결제원·보안원 등)

< 기대효과 >



②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 수립

- (기존) 금융회사 등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산·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 운영시, 법령상 관리·감독 의무, 책임소재 등 불명확
 - 기존 시스템은 개별 금융회사 책임 하에 전산장비, 금융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형태이나, 블록체인 활용시 시스템 관리에 다수 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책임 소재가 모호해 질 가능성*
 - * 예)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시스템(수 개의 노드에 분산 저장)의 특정 노드에서 안전 및 정보관리 등이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소재 문제

- (개선) <u>블록체인 활용 시스템·서비스 운용시 기존규정 적용</u>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감독 의견을 사전적으로 제시
 - ☞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 수립('19.하, 금감원)

< 기대효과 >



③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 확대

- (기존)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는 비중요정보*에 한해 클라우드를 이용한 처리 가능 (→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IT시스템 구축비용 부담)
 - * 비중요정보 : 고객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회사 내부의 업무처리용 정보 (예 : 회사 개요, 서비스·상품 정보, 직원 인사정보 등)
- (개선) 개인신용정보,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(단, 국내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) 활용 가능
 - * 중요정보 : 대고객 금융서비스에 수반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(예 : 대출, 신용카드 발급 등 고객의 개인신용정보,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고유식별정보)
 - ☞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(19.1월 시행 기조치), 해외 클라우드 이슈는 지속 검토

< 기대효과 >



3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

◆ 비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와의 가치충돌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·이익균형을 이루어가는 접근이 중요

□ 금융사기 방지 위한 정보 공유

- (기존) 민간 부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이 금융사기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, 신용정보법 등과 상충* 소지
 - *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정보(예: 대포통장 계좌번호 등)를 제3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사기혐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나, 현실적으로 동의얻기 곤란
- (개선) <u>공공부문에서는 보험사기 방지시스템, 금융질서문란자</u>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(공유정보 확대 등)
 - 민간부문에서는 '사기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(Fraud CB)' 제도 도입 추진(영국, 미국 등 해외사례 참고)
 - ☞ **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규제 정비방안** 발표('19.3분기)



< 기대효과 >

②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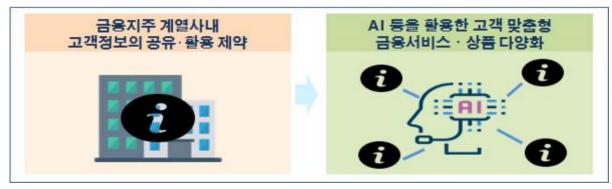
- (기존) 여신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*에 대한 핀테크 기업 등의 접근권한**이 없어 데이터 활용에 한계
 - * 매출액 확인 및 가맹점 수수료율 산출 등을 목적으로 가맹점 정보(사업자번호, 주소 등) 및 거래정보(카드종류, 결제금액, 거래일자, 매입일자 등) 수집·공유
 - ** 현재 가맹점, 카드사, 기타 제3자(정부·한은·통계청 등 정책목적)만 활용 가능

- (개선) <u>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, 단계적으로 시스템</u> 정보를 **핀테크 기업 등**에 제공하는 **오픈 API*** 구축 추진
 - * 오픈 API 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: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에 대해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규칙 (활용 예)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계좌정보·거래내역 또는 결제망 등 접근 → 이를 활용하여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 개발 가능
 - ☞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 운영협약 개정 및 오픈 API 구축 추진('19.하~)



③ 금융지주회사 데이터규제 합리화

- (기존)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*하여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에 제약
 - *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고객의 사전 동의 없는 정보 공유가 허용되나, 영업이 아닌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한정되고, 이 경우 에도 공유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
- (개선) <u>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</u>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유를 허용
 - * 개발된 AI의 학습을 위해 정보공유 기간을 최대 1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
 - ☞ **금융지주감독규정**에 대한 유권해석('19.하)



- **※ 신용정보법 개정안**(18.11월, 김병욱의원) **국회 통과시 수용 가능한 건의과제**
- ▶ 신용카드사에 마이데이터 겸영 허용, 블록체인내 개인정보 삭제의무 규제 정비, 개인신용정보 클라우드 처리 위탁시 정보주체의 동의 규제 완화 등

4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

◈ 금융거래 및 상거래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도록 금융시스템 전환을 법·제도적 지원

①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 확대

- (기존)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,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인터넷은행 이용 제약
 - * 법인 : 법인대표자만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여 그외 직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불가 미성년자 :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비대면으로 불가
- (개선) 인터넷은행법 시행,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및 보안발달 등
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범위 확대*
 - * 예)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
 - ☞ **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** 개정('19.하)

< 기대효과 >



②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의 설명의무 이행방식 다양화

- (기존) 비정형화된 투자일임계약*의 경우, 1:1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방식으로 '영상통화'만 허용
 - * 로보어드바이저, 일임형 ISA 등 정형화된 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는 영상통화 外 스마트폰 앱,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방식 허용 중

- (개선) 비정형화된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영상통화 外 다양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한 후,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규정 개정 검토
 - ☞ **금융규제 샌드박스**를 통해 테스트 허용 추진('19.하)

< 기대효과 >



③ 바이오정보 활용시 실명확인 간소화

- (기존) 대면거래시의 '실명확인'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, 생체정보를 이용한 계속거래는 불가^{*}
 - * 예) 계속거래 고객도 새로운 계좌개설, 1백만원 이상의 송금은 추가 실명확인 필요
- (개선)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속거래 고객에
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거래 허용
 - ☞ **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** 개정 추진('19.하~)

< 기대효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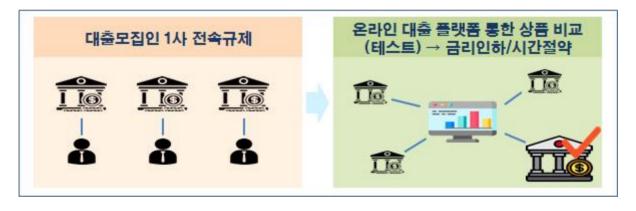


5 금융회사의 핀테크 고도화 지원

●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

[] [공통]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

- (기존)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*,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비교 곤란
 - *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(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): 금융회사의 관리·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(10.4월)
- (개선)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 (금리, 한도 등)을 확인·비교하고, 원하는 상품을 즉시 선택·이용 가능
 - ☞ **금융규제 샌드박스** 통해 테스트 허용('19.5.2일, 대출모집인 1사전속 특례)
 →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모범규준 개정 등 추진



② [은행]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 허용

- (기존) 가상이동통신망사업*(알뜰폰)은 은행의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아 은행의 부수업무로 불인정
 - * 가상이통통신망사업자(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) : 이동통신망사업자 (SKT, KT, LGU+)로부터 통신망을 임차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
- (개선) 금융과 통신의 시너지를 감안, 은행이 금융·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
 - ☞ **금융규제 샌드박스** 통해 테스트 허용('19.4.17일, 은행 부수업무 특례)
 →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부수업무 지속 인정여부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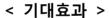
< 기대효과 >



③ [보험]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

- (기존)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의 부품정보, 주행거리정보 등을 제공할 근거가 없어, 사고발생 또는 중고차 거래시에 보험사·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·비교하기 곤란
- (개선) 소비자 편익 및 자동차보험료 산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부품정보, 주행거리 정보 등의 제공근거(보험개발원) 마련

☞ **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** 개정 추진('19.하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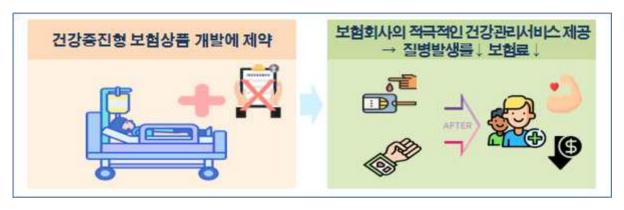




④ [보험]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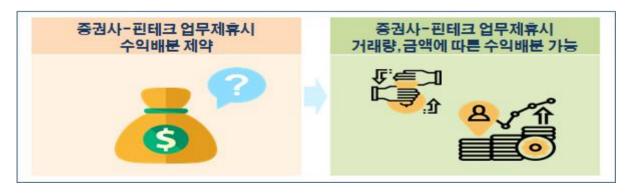
- (기존) 보험회사가 기존 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**헬스케어서비스**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**해석이 불명확**
 - * 의료행위(의료기관이 제공)와 헬스케어서비스(비의료기관도 제공가능)간 개념 구분이 모호하여 보험사의 업무영위 가능성이 불명확

- (개선) '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'을 마련(복지부, '19.5.20)하여 비의료기관이 제공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* 명확화
 - * ①건강인 대상 서비스 ②비만관리 서비스 ③고혈압·당뇨병 환자대상 서비스 (서비스 예시) 고혈압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·조언 제공, 병원내원일 알람 제공, 식단 칼로리 분석 제공, 운동독려 안내메세지 전송 등
 -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 등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입자로부터 질병정보를 수집·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☞ **복지부 가이드라인** 제정('19.5월, 기조치), **신용정보법 시행령** 개정('20년)



[5] [중권] 핀테크 업무제휴시 수익배분 자율화

- (기존) 금융투자업자가 핀테크 기업(非금융투자업자)과 업무제휴시 거래대금, 거래량 등과 연동한 수수료 배분 금지
 - *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금융투자업자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서 사실상 수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거래대금, 거래량 등에 연동한 직·간접 대가 지급 금지
- (개선)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, 지정대리인 등 업무제휴시 자율적인 수수료 배분 허용
 - □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('19.하)



IV. 기대효과

□ 금융과 핀테크간의 결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.

- 금융회사의 **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** 확대, 금융투자업자와 핀테크 기업간의 **자율적인 수수료 배분** 허용 등
- □ 금융과 핀테크간의 협력을 통한 상호 윈윈 전략 수립 지원

②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.

-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완화에 따른 **온라인 대출 플랫폼**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**가장 유리한 상품을 손쉽게** 찾을 수 있음
- 금융사기 의심정보 공유확대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되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③ 온라인 금융거래는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.

- 비대면 거래에 대한 제약요인(실명확인, 설명의무 등)을 해소하여 온라인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- **인터넷은행의 영업기반 확대**, 보험사의 **인슈테크 고도화** 등

④ 금융분야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.

- 자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AI,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금융분야에 안정적으로 적용·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
- **금융-통신, 금융-헬스케어 등 산업간 융합**에 대한 실험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새로운 **혁신성장** 동력 발굴

V. 향후계획: 핀테크 규제혁신 지속 추진

1 금번 T/F 검토결과 이행

- □ (수용과제) '19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, 가이드라인 마련, 유권 해석 등의 필요 조치 신속하게 추진
 -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가 허용된 과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, 근본적인 규제혁신과 연계
- □ (중장기검토)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논의 지속 추진
 - ※ 과제별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협회 등을 통해 건의기업에 회신 등 적극 사후관리

2 '19년 하반기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향

①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

-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국내 수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규제 개선
 - * "해외에서는 가능하나, 국내에서는 불가"한 사업모델 허용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(예) 美 Kabbage : 온라인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중개 플랫폼(기업가치 10억달러)

②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

○ **핀테크 랩,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** 등을 상시적으로 **현장 방문**하고, 규제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

③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

○ 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**혁신 신기술**은 **테스트**를 통해 금융서비스化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며 규범화 여부를 판단

참고 2 (요약)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/F 결과

구 분		법규개정	유권해석/가이드라인 등	기타
수용 (150)		23건	7건	14건
	기조치 완료 (44건)	▶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 자본금 완화	▶금융거래정보 제공시실 통보 방식으로 이메일도 허용	▶지정대리인 절차 간소화
	(4471)	▶벤처·창투조합의 핀테크 기업 투자 허용	▶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확인서 중복작성 개선	▶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보안지원
		56건	12건	28건
		▶자동차보험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	▶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범위 확대(가이드라인 개정)	▶신분증진위확인 서비스 이용확대
	개선 추진	▶접근매체 발행시 본인 확인 절차 합리화	► AI 인증·보안 가이드라인 ►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관련 감독방안 수립 ► 금융지주회사 데이터활용 규제 합리화	▶금융권 오픈 API 활성화
	(96건)	▶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한도 상향/소액신용		▶금융사기 방지 위한 정보공유
		▶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		▶카드 가맹점 매출
		▶전자금융거래 약관 제· 개정시 보고기간 단축		정보 공유
	샌드 박스 (10건)	▶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▶휴대폰 SMS인증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허용 ▶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▶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허용 ▶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허용 ▶디지털 증권방식으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·유통 ▶디지털 ID 인증방식 허용 ▶비대면 투자일임계약시 영상통화外 설명의무 이행방식 허용		
불수용※	중장기 검토 (15건)	 ▶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▶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▶긍정적 과세정보 공유 ▶블록체인 활용시 정보공유기관에 대한 사전 포괄동의 허용 ▶보험약관의 전자적 교부를 다운로드 外 온라인 열람도 허용 		
	불수용 (23건)	▶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▶ICO 허용 ▶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허용 ▶증권사에 가상통화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		